

이용약관 별표

[알뜰폰 서비스 밸류컴(VALUECOMM)]

2026-08-21

한국피엠오(주)

목 차

[별표 1]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1.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
2. LG 선불 요금제(VAT포함)
3. LG 후불 요금제(VAT포함)
4. KT 선불 요금제(VAT포함)
5. KT 후불 요금제(VAT포함)
6. 요금 등의 할인
7. 요금 등의 감면
8. 부가서비스
9. 실비
10. 수수료

[별표 2] 구비서류

1. 가입 계약 시
2. 부가서비스 신청 시
3. 변경 신청 시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시
5. 해지 시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별표 4] 고객 불만처리대책

1. 이용고객 물만 처리절차
2. 고객민원 유형별 처리대책

[별표 5] 국제로밍서비스

1. LGU+ 국가별 로밍서비스 요율표
2. KT 국가별 로밍서비스 요율표

[별표 1] 요금표

1.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

◆ LGU+

항목	기준	통화료(VAT+)	비고
음성	초	1.98원	
문자	건	22원	
데이터	MB	22.528원	0.011원/0.5KB
MMS(문자)	건	44원	
MMS(사진)	건	22원	사진/그림/배경음악 첨부
MMS(동영상 첨부)	건	440원	동영상 첨부

※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금제(상품)에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적용요율을 표시함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 KT

항목	기준	통화료(VAT+)	비고
음성	초	1.98원	
문자	건	22원	
데이터	MB	22.528원	0.011원/0.5KB
MMS(문자)	건	44원	
MMS(사진)	건	22원	사진/그림/배경음악 첨부
MMS(동영상 첨부)	건	440원	동영상 첨부

※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금제(상품)에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적용요율을 표시함

※ 요금제 별 기존통화료가 상이합니다. (요금제 비교 참조)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2. LG 선불 요금제(VAT포함)

가) 내용

- 1) LGU+ 선불형 서비스로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 2) 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는 제세공과금(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
- 3) 사용기간
 - ① 기본 제공량은 30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30 일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료 미충전 시 월 기본 제공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 기본료 충전 후 30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 90일동안 기본료 충전이 없을 경우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③ 재충전이 없는 D+15일 동안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이 제한되며 음성에 대한 착신만 제공됩니다.
 - ④ 최초 충전 및 재충전시 해당요금제의 기본료 이상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 후 잔액이 해당 요금제 기본료 이상으로 남아있을 경우 사용기간 30일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충전)됩니다.
 - ⑤ 충전은 자동이체, 가상계좌입금,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⑥ 기본제공이 있는 선불 요금제는 서비스별로 기본 제공량을 소진할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이 정지됩니다.

나) 요금제표

요금제명	기본료(월)	음성제공량	SMS 제공량	데이터제공량	Qos 제공속도	부가통화
밸류 242	24,200 원	300 분	300 건	300Mb	400Kbps	-
밸류 363	36,300 원	기본	기본	300Mb	3MbPS	50 분
밸류 G 407	40,700 원	기본	기본	300Mb	3MbPS	국제전화 일 20 분
밸류 440	44,000 원	기본	기본	3Gb	3MbPS	300 분-
밸류 330	33,000 원	100 분	100 건	10Gb	-	-
밸류 390	39,000 원	100 분	100 건	15Gb	3MbPS	기본+부가 100 분
밸류 550	55,000 원	기본	기본	11Gb+일 2Gb	3MbPS	300 분
밸류 G 590	59,000 원	기본	기본	11Gb+일 2Gb	3MbPS	국제전화 일 20 분
밸류 660	66,000 원	기본	기본	5Gb(일)	5MbPS	300 분
밸류 선불 표준	4,950 원	-	-	-	-	-
밸류 선불 표준+	9,900 원	-	-	-	-	-
선불정액 363(10.3GB+3Mbps)	36,300 원	기본	기본	10.3Gb	3MbPS	50 분
밸류 297	29,700 원	기본	기본	300Mb	1MbPS	-
밸류 506	50,600 원	기본	기본	11Gb	3MbPS	300 분
밸류 G 550	55,000 원	기본	기본	11Gb	3MbPS	국제전화 일 20 분
밸류 383(10.3GB)	38,300 원	기본	기본	10.3Gb	3MbPS	50 분

1) 음성

- ① 유무선 기본제공이란 무선(010,011,016,017,018,019), 유선(지역번호 02,03X,04X,05X,06X), 인터넷전화(070)를 말하며 정상 이용 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
- ② 그 외 부가통화는 무선/유선/인터넷전화기 아닌 모든 통화(전국대표번호(15XX,16XX), 평생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 등을 말하며 합산하여 제공 통화량 내에서 이용가능(단, KT114 전화번호 안내발신 미제공)
- ③ 제공량 초과시 음성은 1.98원/초, 영상 3.3원/초로 차감됨 (추가 충전 후 선불 기본에만 해당)
- ④ 영상/부가 제공 통화량 초과 시 정상 요금으로 과금(영상통화 이용 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로 차감)
- ⑤ 영상통화는 부가통화 사용량 내 제공
- ⑥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및 해지를 적용할 수 있음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차감) -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 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제3자 임대 등)
- ⑦ 060 정보이용료는 사용이 불가하나 추가적으로 충전 후에는 차감하여 사용 가능
- ⑧ 국제전화 20분/일 제공되는 요금제의 경우 국제전화 발신시 002로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제휴한 국가 중국, 태국, 몽고, 미국, 캐나다만 20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국가는 별도 요율 적용됨
- ⑨ 국제전화는 일 제공되는 20분 초과시 차단됨

2) 메시지

- ① 사업자 구분 없이 무제한 제공
- ②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및 해지를 적용할 수 있음 - 메시지 사용건수가 1일 200건 이상, 월 10회 초과 시/메시지 수신처가 3,000명 초과시/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500건 초과 시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제3자 임대 등)
- ③ 기본제공량 초과시 SMS 22원/건, MMS text 44원, 사진 첨부 220원, 동영상 첨부 440원, 이메일 55원으로 차감

3) 데이터

- ① 무료 제공량 초과 시 문자 안내 후 정지되며 충전 후 초과 통화료는 22.53원(부가세포함)/MB로 소진
- ② 핫스팟 이용은 월 기본 제공량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제공량 소진 시 충전 후 사용 가능
- ③ 060등 정보이용료 관련 서비스는 사용이 불가하나 충전 후에는 사용 가능(충전 잔액 소진시 사용 불가)
- ④ mVoIP는 데이터 기본제공량에 제한없이 사용 가능. 단, LTE기본데이터 소진 후 최대 안심데이터(Qos) 적용 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⑤ LTE 미제공 지역에서는 CDMA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제공량에서 동일하게 차감(단, CDMA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다. 부가서비스

- 1) 부가서비스는 가입 시 충전금액이 없을 경우 사용불가(충전 잔액이 일 요금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 2) 부가서비스는 월 사용 금액에 대해 일 단위로 측정되어 일할 소진됨
- 3) 사용 불가 서비스 : 스마트로밍서비스, 듀얼번호서비스
- 4) 자동가입 부가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용	비고
웹발신 문자 알림 서비스	웹에서 보낸 문자를 바로 알려주어 스팸이나 스팸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 가입
스팸차단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이나 도박, 음란, 의약품, 불법대출광고 등의 스팸 문자메시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	무료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 가입

라. 유의사항

- 1) 충전 시 최소단위는 정액요금으로만 가능하며 당일에 한하여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지 시 충전 및 선납 금액 환불 불가)
- 2) 해지 시 3일 이내 취소 가능하며 단, 직권해지는 번호이동 가입고객은 당월 내 당일 포함 3일/신규는 당월까지만 가능
- 3) 소액결제나 콜렉트콜은 사용불가
- 4) Wifi는 사용 가능하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U+Zone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 불가
- 5) 개통 당월의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되며 해지, 일시정지, 직권정지 되는 경우 당월 해지 취소, 정지해제 시에만 기존 제공량이 제공되며 당월 이후에는 소멸되며 선납 후 정상 서비스 사용이 가능
- 6) 요금제의 변경 신청은 월 중 가능하나 사용은 매월 1일부터 사용 가능(매월 1회만 변경 가능)
- 7) 요금제 변경 시 기존 충전액은 승계 가능
- 8) 개통 후 7일 이내 선납이 안된 경우 개통 취소 또는 직권 해지 될 수 있음
- 9) 사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지된 번호에 대하여 유지되지 않음
- 10) 외국인의 경우 SK,KT망 회선과 별도로 최대 1회선 가입 가능

※ 위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적용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으며, 30일 미만 단기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여 가입이 특정 조건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여권 개통, 회사명의 개통 후 명의변경 처리, 30일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해지처리 등)

마. 로밍서비스

■ 아시아 로밍패스 <신설>

○ 제공 내용

요금제명	기본요금	기본 제공량	데이터 제공내용
아시아 로밍패스	39,000 원 /30 일	6GB+속도제어, 음성수신 무제한	LTE/WCDMA/GSM

*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공국가 : 일본,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 추가 혜택

- 유플러스 홈페이지, 고객센터앱 등 디지털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아시아 로밍패스'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별도요금 부과 없이 1GB를 추가 제공함
- '아시아 로밍패스'를 가입한 대표회선의 로밍데이터를 가족 및 지인 등 최대4회선에게 1GB와 묶음 단위(2GB, 3GB, 5GB) 중 선택하여 나눠주거나,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로밍패스 나눠쓰기'와 동일
- '아시아 로밍패스'를 가입하고 추가 데이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1GB 단위(최대 3GB/1회)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로밍패스 충전 1GB'와 동일

○ 비고

1. 해당 요금제는 해당 국가/사업자에서만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데이터 사용 불가함
2. 데이터로밍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이 과금됨. 단,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3. 기본 제공 대상은 데이터, 음성 수신 전화만 적용되며, 음성발신, 영상전화, SMS, MMS 로밍은 별도 요금이 부과됨
4.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할 경우, 데이터는 최대 400kbps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5. 요금제 사용 시작일 기점, 최대사용가능 기간인 30일이 만료되면 데이터는 자동 차단됨
6. 음성발신 요금은 초당 1.98원이 별도 부과되며, 음성발신 서비스 범위는 방문국 현지 통화, 한국으로의 통화, 제3국으로의 통화 대상임 (VoLTE 통화 포함) *영상통화는 제외
7. 본 요금제를 가입 및 이용하신 고객 대상 해당 방문 국가에서 사용하는 음성수신(받는 전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함
8.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는 중복가입 불가

9. 1일 적용기준은 고객이 설정한 시작시간부터 산정됨
10. 1일 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기본요금 부과
11. KT 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별도 청구됨
12.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개인용도와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통신사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LG 후불 요금제(VAT포함)

요금제명	기본료(월)	음성제공량	SMS 제공량	데이터제공량	Qos 제공속도	부가통화
KPMO(음성마음껏/11GB+)	36,300-원	기본	기본	11Gb+일 2Gb	3MbPS	-
밸류 올 프리 11GB+	44,000-원	기본	기본	11Gb+일 2Gb	3MbPS	300 분
밸류 5G 스피드 스탠다드 150GB+5Mbps	66,000 원	기본	기본	150Gb	5MbPS	300 분
밸류 매일 매일 5GB+	55,000-원	기본	기본	5Gb(일)	5MbPS	300-분
밸류 데이터 롱 15GB+	38,500-원	100-분	100-건	15Gb	3MbPS	100-분
밸류 데이터안심 6GB+	22,000-원	기본	기본	6Gb	1MbPS	300-분
밸류 5G 스피드 스페셜 180GB+10Mbps	66,000-원	기본	기본	180Gb	10MbPS	-
밸류 알뜰+(100 분/1GB)	16,500-원	100-분	100-건	1Gb	1MbPS	-
밸류 5G 스피드 심플 12GB+1Mbps	49,500-원	기본	기본	12Gb	1MbPS	300-분
밸류 알뜰+(250 분/2.5GB)	25,300-원	250-분	250-건	2.5Gb	1MbPS	-
밸류 데이터안심 7GB+	24,200-원	기본	기본	7Gb	1MbPS	-
밸류 알뜰+(200 분/5GB)	29,700-원	200-분	100-건	5Gb	1MbPS	-
밸류 알뜰+(100 분/6GB)	31,900-원	100-분	100-건	6Gb	1MbPS	-
밸류 데이터안심 2 7GB+	18,700 원	기본	기본	7Gb	1MbPS	300 분
밸류 데이터 롱 2 15GB+	28,600 원	100 분	100 건	15Gb	3MbPS	100 분
밸류 올 프리 2 11GB+	36,300 원	기본	기본	11Gb+일 2Gb	3MbPS	300 분
밸류 데이터안심 1GB+	8,800 원	기본	기본	1Gb	1MbPS	100 분
밸류 데이터안심 4.5GB+	14,300 원	기본	기본	4.5Gb	1MbPS	300 분
밸류 데이터안심 5GB+	15,400 원	기본	기본	5Gb	1MbPS	300 분
밸류 5G 슬림(30G+)	44,000-원	무제한	무제한	30Gb	1MbPS	300-분
[PMO]밸류 어르신 실버 8GB+	18,000 원	기본	기본	8Gb	1MbPS	-
[PMO]밸류 어르신 실버 4GB+	13,000 원	기본	기본	4Gb	1MbPS	-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 단말과 결합(할부 등록)하여 가입 불가

※ 밸류 올 프리2 11GB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최대, 일 2GB 한도 내에서 별도 추가 과금 없이 정상 속도로 이용 가능하며, 일 2GB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로 속도로 무료 이용 가능

※ 3G 단말기에서 사용 불가.

가)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함(1.98 원/초)

· 일 음성 통화량이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 음성통화량이 월 6,000 분(기본료 55,000 원 미만) 또는 10,000 분(기본료 55,000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에 따라 종량 과금함.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15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 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 건을 초과하는 경우

·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발송제한 기준 예외 적용 가능(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

4. KT 선불 요금제(VAT포함)

요금제명	기본료(월)	음성제공량	SMS 제공량	데이터제공량	Qos 제공속도	부가통화
밸류 V0	0원	-	-	-	-	-
밸류 V6	6,600 원	-	-	-	-	-
밸류 V9	9,900 원	-	-	-	-	-
밸류 V36	36,000 원	기본	기본	300Mb	-	-
밸류 V39	39,900 원	100 분	100 건	15Gb	3Mbps	-
밸류 V56	56,100 원	기본	기본	10Gb+일 2Gb	3Mbps	-
밸류 V59	59,400 원	기본	기본	100Gb	5Mbps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합법 국내체류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단, 체류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여권으로 가입시 3 개월만 사용 가능하며,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며, 합법 국내체류시간이 만료되었으나 카드 잔액이 남은 경우 사용기간 이내에 수신, 발신 가능함)

가) 종량형 요금제

※ 주의 - 충전금액은 통화료, 데이터료, SMS 료, MMS 료 등 각각 서비스 요금으로 합산 소진됨

○ 요금제 간 변경은 월 1 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충전일로부터 계산)

- 사용기간 이내에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사용한 금액에 관계없이 0 이 됩니다
-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이내에는 수신(국제전화 제외)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이내에 금액을 충전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10 일 이내 재충전하면 잔액과 신규 충전 금액이 합산됩니다.
- 사용기간 연장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1 년까지만 가능함.
-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10 일 이내 대리점, 지점 등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신분증명서류 제출) 후 사용 기간 연장 가능

나) 정액형 요금제

- ① LTE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 ② 기본 제공량은 매월 가입일 기준으로 제공되어 익월 가입일 전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기본료 미충전시 기본 제공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요금제 별로 기본 제공량이 있으며 매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본제공량이 충전됩니다. (단, 28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28일을 기준으로 기본제공 음성/문자/데이터가 충전됨)
- ④ 요금제 별로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 시 요금요율에 따라 충전잔액에서 과금 됩니다. 이로 인해 충전잔액이 소진된 경우 기본 제공량이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단, 충전 잔액이 소진된(D)일로 부터 3일내(D+3) 재충전이 있을 경우 서비스가 재개되며 남은 기본 제공량을 정해진 사용기간 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기간 만료 3 일전/1일전, 사용기간 만료시점, 잔액 소진시점, 직권해지 3 일/1일 때 각각 문자 등을 통보함.
- ⑥ 전화번호 수신 가능 기간은 충전 후 45일이며 미충전시 최대 전화번호 유지기간은 75일로 합니다. 이후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⑦ 부가통화, 국제전화 이용 시 일 차감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30일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KT 후불 요금제(VAT포함)

요금제명	기본료(월)	음성제공량	SMS 제공량	데이터제공량	Qos 제공속도	부가통화
밸류 V500	9,900 원	60 분	50 건	500Mb	-	-
밸류 V1G	13,200 원	60 분	50 건	1Gb	-	-
밸류 V2G	16,500 원	60 분	50 건	2Gb	-	-
밸류 V10G	28,600 원	100 분	100 건	10Gb	-	-
밸류 데이터 15G+	35,200 원	100 분	100 건	15Gb	3MbPS	-
밸류 데이터 10G+	42,9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Gb+일 2Gb	3MbPS	200 분
밸류 데이터 100G+	53,9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0Gb	5MbPS	300 분
밸류 5G(10+)	55,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Gb	1MbPS	300 분
밸류 5G(200+)	77,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30Gb	1MbPS	300 분
밸류 데이터 1+	19,8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Gb	1MbPS	300 분
밸류자니1 데이터15+	36,3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5Gb	3Mbps	-
밸류자니2 데이터15+	34,1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5Gb	3Mbps	300 분
밸류자니데이터10+	40,7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Gb	3Mbps	-
복지 심플 1G	12,1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Gb	1MbPS	-
복지 스마트 1.5G	15,4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5Gb	1MbPS	-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 단말과 결합(할부 등록)하여 가입 불가

※ 밸류 데이터 10GB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최대, 일 2GB 한도 내에서 별도 추가 과금 없이 정상 속도로 이용 가능하며, 일 2GB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로 속도로 무료 이용 가능

※ 3G 단말기에서 사용 불가.

가)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함(1.98 원/초)

· 일 음성 통화량이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 음성통화량이 월 6,000 분(기본료 55,000 원 미만) 또는 10,000 분(기본료 55,000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에 따라 종량 과금함.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15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 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 건을 초과하는 경우

·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발송제한 기준 예외 적용 가능(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

6. 요금 등의 할인

- 약정할인

- ◆ 요금약정 할인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요금 할인 반환금도 발생하지 않음
- ◆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 (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7.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비고
사업용 서비스	-가입비,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 -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 -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전화번호 안내통화 등	국내통화료 면제	이용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통화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 휴지	기본료, 부가사용료(기본료/월), 임대료 면제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단절통화	국내통화료 면제	10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단, KB 과금 통화 제외)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	- 월 기본료 3,850 원/대당 (VAT 포함).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전환복무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 29 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월 기본료 3,850 원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1인당 최대 3회선 한도) - 부가사용료(기본료/월) 면제	-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단, 선불은 제외) - 군입대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고객	- 가입후 14 일 이내 해지시 가입비 반환,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 가입후 15 일 이상 6 개월 이내 해지시	가입 후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 ※ 주생활지 :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1 개월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 월 기본료 3,850원/대당(VAT포함) - 군입대정지자의 경우 면제	-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 군입대 정지자의 경우 : 기본료 면제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데이터통화료가 15 만원 초과한 고객	- 15 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 단, 인터넷 직접접속서비스(PDA 또는 무선모뎀 및 휴대폰을 통해 PC연결 하여 무선인터넷접속하는 경우)는 약관적용일 기준으로 면제 처리되며, 별도 약관신고가 있을 때까지 연장 적용함. - 법인명의 가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	복지 요금제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광복회 소속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그 유족, 4.19 혁명부상자회 소속의 4.19 혁명 상이자,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소속의 4.19 혁명희생자 유족,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소속의 재일학도의용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소속의 광주민주부상자, 6.18 자유 상이자회 소속의 6.18 자유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광복회 대한민국의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의 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의 전물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보편적 의무의 내용) 제 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차상위계층응용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보편적 의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법 제50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자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자를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우선돌봄차상위'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만 6세이하 아동은 제외

8. 부가서비스

가. 기본 제공서비스 (별도의 신청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고
발신번호표시	수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휴대폰 상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	
통합사서함	핸드폰 전원이 꺼진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음성메시지를 들을 때와 저장할 때에 별도 통화	

	료 부과)	
정보제공사업자번호차단	정보제공사업자가 보내는 스팸 음성, 스팸 문자 메시지들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나. 무료 부가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고
발신번호표시제한	수신하는 사람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발신하는 사람의 번호가 액정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통화중대기	통화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중인 상대방을 대기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착신거절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무선인터넷차단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국제전화발신제한	국제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익명호수신거부	발신번호표시 제한한 발신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서비스. 통화로 연결되지 않고 ARS가 안내되며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10번호연결서비스	01X번호에서 010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및 기존번호를 해지한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전 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변경된 번호로 연결 후 변경내역을 문자 또는음 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스팸차단서비스	고객이 설정한 조건(문구, 번호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 번호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가입자고객의 신청을 받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문자중계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문자중계사업자가 차단.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U+,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링크, 인 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삼 성SDS 10개사임 ※ 문자중계사업자 : 일반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자 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 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

다. 유료 부가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월 이용요금(VAT포함)
매너콜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1,100원
착신전환	핸드폰이 상태와 상관없이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음성, 문자 전환 가능)	1,650원
	핸드폰이 상태와 상관없이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음성만 전환 가능)	770원

9. 실비

항목	요금부과기준	비고
----	--------	----

가입비	없음	
보증보험료	가입시 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부방법: 즉납 또는 후납	- 사유발생 시 -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
번호이동수수료	800원(부가세 포함)	

10. 수수료

종별	요금부과 기준	비고
단말기 대여료	1단말기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부가세 포함)	회사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고객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1건 (부가세 포함)	타사에서 번호이동시 부과
국제 로밍 수수료	이용약관 적용	국제 로밍 이용계약자
KT번호안내 서비스 이용료	KT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KT의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KT번호안내 직접연결서비스	KT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통화료: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1초당 2원 부과
KT번호안내 간접연결서비스	KT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지역번호 + 114 연결 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회사와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금액 (부가세별도)	통화료 부과
콜렉트콜 서비스	데이콤 1663 온세 1677 SK브로드밴드 1655 SK텔레콤 1682 KT 1541 - 한국피엠오 고객이 발신 시 착신자에게 2.4원/초(연결된 1가입자당)의 통화요금 부과 - 한국피엠오 고객이 수신 시 해당 발신 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사업자의 요금(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 기준)이 부과됨	- 전화를 받는 착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제한 대상: 선불이용 가입자

[별표 2] 구비서류

1. 가입 계약 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 본인 : 신분증(단, 비대면 가입 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기기변경에 한함)으로 대체가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이용계약서는 공통
법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 시위 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 - 일반법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법인 6대 이상 개통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부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가입고객 내방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단, 법정대리인 동행 시 인감증명서 제외) - 법정대리인만 내방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제3자 내방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20세 미만 - 가입고객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단, 대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하여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중 1개 제출 가능)	○ 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구분	선불	후불	외국인 가입계약서
	일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여권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 신고증	
	공무원	여권 또는 공무원 신분증	여권 또는 공무원 신분증	
	주한미군	미군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미군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 시설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 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유공자 단체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 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 서비스	○ 본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저소득층용 서비스	- 전화(방문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 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의사 확인 불가능 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 장 및 인감증명서 ※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용 서비스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대상자)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국가유공자증 (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을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전자계약서를 통한 가입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 시 혹은 혜택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 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 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 합니다.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 및 안전행정부 를 통해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2. 부가서비스 신청시

구분	내용	비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은 본인 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3.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

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 가능하며, 2002.6.30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2005.10.1일부터 사용불가)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구분	내용			비고
번호/단말기/ 주소변경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변경신청서 공통
개명, 개칭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개인 : - 양수/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 양도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양수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 -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 건강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일시정지 및 일시정지 해제	개인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명의자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	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신청서,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	고객정보 확인(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 부 (단, 일시정지 해제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 본 팩스로 송부)
	법인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 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공문),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공문, 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전산에 등록된 실사용자/대리인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통화내역 열람	개인 :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 인용)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휴대(SMS 인증번호 확 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기업신청 시 구비서류 와 동일	- 전화,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 송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되 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 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할 수 있 등
이용요금 확인 용 통화내역 열람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 제한 후 제공 가능 -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 팩스 및 우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 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 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 편, 팩스로 제공 (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5. 해지시

가. 방문 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	------	----

일반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해지신청서(공통) - 개인사업자 대리인방문시: 가입고객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대리인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대리인 불가)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 일반의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신분증만으로 업무처리 가능(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도 관리)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 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나. 팩스, 전화, 우편 요청 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가입고객 신분증	지점으로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 해지신청서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계좌 - 당일에 지정계좌로 납부한(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 입금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외국인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방문 가입 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다. 그외 예외적인 경우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 제한	구비서류	비고
일반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	가족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 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단,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일시정지로 인해 감면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체류	가족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중인 자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 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 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상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이혼으로 호적상에서 삭제된 자는 제외)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 용 등을 이용• 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 고 1년 동안 이용신 청 승낙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 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 하고 1년 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 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 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간 이용신청 승낙 을 제한한다.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 은 경우
중고폰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통법 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 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요청

[별표4] 고객 불만처리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절차

가.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 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나.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고객민원 유형별 처리대책

가. 고객보호를 위한 민원유형별 처리는 당일접수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시간 이내 고객통화를 진행합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은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에 재통화를 약속하고 신속히 처리함

민원유형	처리방법	처리기한
회사명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요금제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약정기간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정지관련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기변불가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해지 위약금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기타가입사항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회사정책 불만	서비스 관련하여 타사와 비교를 통한 상담을 진행	당일처리
고객센터연결 불만	불편한 점에 대한 사과 응대 및 개선 약속	당일처리
청구서관련 불만	불편한 점에 대한 사과 진행 및 별도 관리	당일처리
통화내역열람 불만	열람절차 불만으로 절차 간소화 진행	당일처리
사은품관련 배송 지연	사은품 재고 사유 파악 후 처리, 보상	당일처리
상담원 불친절	사과 후 혜택 제공, 개선사항 안내	당일처리
업무 오 상담 관련	오 상담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재 상담, 혜택제공	당일처리
업무 오 처리 관련	오 처리된 내용 확인 후 정상처리 확인	당일처리
업무누락 관련	누락된 내용에 대해 금전 부분과 불편내용에 대한 처리	당일처리
기타 회사관련 사항	회사 서비스 및 정책 불만에 대해 개선사항, 타사비교 설명	당일처리
단말기불량	교환 및 또는 대체 폰 또는 제조사 A/S센터 안내	당일처리
대체 폰 불만	대체 폰 지급	당일처리
유심관련불만	유심관련 오 배송 또는 불량으로 인한 교체	당일처리
기타 단말관련	단말기 사용불편 및 단말기 외관문제로 교환, 상세 설명	당일처리
14일 이전 취소 건	개통취소에 따라 처리 진행	당일처리
명의자 사망해지	명의자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단말기 반납, 요금감면처리	당일처리
만기요금제 미적용	계약기간 종료이후 최저요금제 미 변경 상담, 환불처리	당일처리
기타 만기관련	만기고객 서비스 혜택 및 재 임대 관련 상담	당일처리
통화품질불량	통화품질 개선 및 무료통화제공	당일처리
명의도용	영업대리점 이관, 명의도용 확인될 경우 처리	당일처리
전산 미 권한 불만	전산 권한 제한에 따른 지연 또는 처리불가시 조속 히 본사 처리	당일처리
대리점/판매점 과실	영업대리점 이관(24시간 내), 업무과실시 선배상 후 대리점 처리	당일처리
고객의 일방주장	타당성 있는 경우 상담처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설득	당일처리
요금불만	정확한 사용내역으로 상담	당일처리
데이터요금 불만	정확한 사용내역으로 상담	당일처리
부가서비스관련 불만	사용내역 및 등록 내용 확인 후 상담	당일처리
소액결제불만	사용내역 및 등록 내용 확인 후 상담	당일처리
약정할인 해지 위약금 불만	제공되는 혜택 설명 후 환불조치 또는 수납진행	당일처리

[별표5] 국제로밍서비스

LG의 WCDMA 이용약관의 국가별 로밍요금에 준함.

(단, 로밍제공국가와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제로밍관련보충설명자료

구분	내용
요금부가체계	로밍서비스 이용자 발신시 : - 서비스 이용시간에 발신 요율을 적용하여 통화료 산정 로밍서비스 이용자 착신시 : - 서비스이용 시간에 착신요율을 적용하여 통화료 산정을 하되 한국과 방문국간의 국제전화요금이 추가로 발생됨 - 착신통화료는 외국사업자가착신요금을부과할경우에만적용됨
Call set-up비용	통화발생에 필요한 부수비용을 요금 외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1. LGU+ 국가별 로밍서비스 요금표

<WCDMA/GSM자동로밍 국가별 요금(단위: 원/초,건 부가세 포함) >

국가명	현지발신	국제발신	수신	SMS발신	MMS발신	데이터/패킷
가나	26.5	47.6	36.5	330	550	0.275
가봉	26.5	109.0	36.5	330	550	0.275
가이아나	26.5	47.6	36.5	330	550	0.275
감비아	26.5	47.6	36.5	330	550	0.275
건지	12.8	32.0	15.8	330	550	0.275
과들루프	14.6	62.3	23.5	330	550	0.275
과테말라	26.5	47.6	37.3	330	550	0.275
괌	10.0	27.5	18.8	165	550	0.275
그레나다	26.5	47.6	37.3	330	550	0.275
그리스	12.8	32.0	17.7	330	550	0.275
그린란드	26.5	47.6	34.2	330	550	0.275
기니	26.5	47.6	37.3	330	550	0.275
기니비사우	26.5	47.6	37.3	330	550	0.275
나미비아	26.5	47.6	36.5	330	550	0.275
나우루	26.5	47.6	38.8	330	550	0.275
나이지리아	26.5	47.6	38.8	330	550	0.275
남수단	13.8	59.5	36.5	330	550	0.275
남아프리카공화국	26.5	47.6	38.6	330	550	0.275
네덜란드	12.8	29.2	16.1	330	550	0.275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26.5	47.6	34.2	330	550	0.275
네팔	26.5	47.6	43.5	330	550	0.275
노르웨이	14.6	62.3	22.0	165	550	0.275
뉴질랜드	10.0	27.5	22.0	330	550	0.275
뉴칼레도니아	26.5	47.6	35.8	330	550	0.275
니제르	26.5	47.6	37.3	330	550	0.275
니카라과	26.5	47.6	37.3	330	550	0.275
대만	12.8	23.8	21.9	165	550	0.275
더세인트	14.6	62.3	23.5	330	550	0.275
데시라데	14.6	62.3	23.5	330	550	0.275
덴마크	12.8	32.0	17.7	330	550	0.275
도미니카공화국	26.5	47.6	37.3	330	550	0.275

도미니카연방	26.5	47.6	37.3	330	550	0.275
독일	12.8	32.0	15.0	330	550	0.275
동티모르	26.5	47.6	66.6	330	550	0.275
라오스	26.5	109.0	37.3	165	550	0.275
라이베리아	26.5	47.6	36.5	330	550	0.275
라트비아	12.8	32.0	19.3	330	550	0.275
러시아	12.8	32.0	22.1	330	550	0.275
레바논	26.5	47.6	37.3	165	550	0.275
레소토	26.5	47.6	36.5	330	550	0.275
레위니옹	12.8	32.0	20.8	330	550	0.275
루마니아	12.8	32.0	19.3	330	550	0.275
룩셈부르크	12.8	32.0	17.7	330	550	0.275
르완다	26.5	47.6	38.8	330	550	0.275
리비아	26.5	47.6	36.5	330	550	0.275
리투아니아	12.8	32.0	19.3	330	550	0.275
리히텐슈타인	12.8	32.0	17.7	330	550	0.275
마다가스카르	26.5	47.6	38.8	330	550	0.275
마르티니크	14.6	62.3	23.5	330	550	0.275
마리가란테	14.6	62.3	23.5	330	550	0.275
마요트	12.8	32.0	20.8	330	550	0.275
마카오	10.0	27.5	23.2	165	550	0.275
마케도니아	26.5	47.6	35.8	330	550	0.275
말라위	26.5	47.6	36.5	330	550	0.275
말레이시아	12.8	32.0	18.0	165	550	0.275
말리	26.5	47.6	38.8	330	550	0.275
맨 섬	12.8	32.0	15.8	330	550	0.275
멕시코	26.5	47.6	37.7	330	550	0.275
모나코	12.8	32.0	17.7	330	550	0.275
모로코	26.5	47.6	36.5	330	550	0.275
모리셔스	26.5	47.6	36.5	330	550	0.275
모리타니	26.5	47.6	31.2	330	550	0.275
모잠비크	26.5	47.6	36.5	330	550	0.275
몬테네그로	26.5	47.6	35.8	330	550	0.275
몬트세랫	18.3	75.1	36.4	330	550	0.275
몰도바	26.5	47.6	35.8	330	550	0.275
몰디브	26.5	109.0	36.5	165	550	0.275
몰타	12.8	32.0	14.7	330	550	0.275
몽골	26.5	109.0	38.8	165	550	0.275
미국	18.3	36.6	20.2	165	550	0.275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18.3	36.6	22.9	330	550	0.275
미국령 사모아	26.5	47.6	35.8	330	550	0.275
미얀마	10.0	40.3	26.1	330	550	0.275
미크로네시아연방	26.5	109.0	36.5	330	550	0.275
바누아투	26.5	47.6	38.8	330	550	0.275
바레인	26.5	47.6	37.3	165	550	0.275
바베이도스	26.5	47.6	37.3	330	550	0.275
바티칸시국	12.8	32.0	14.6	330	550	0.275
바하마	26.5	47.6	37.3	330	550	0.275
방글라데시	26.5	47.6	41.8	165	550	0.275
버뮤다	26.5	47.6	37.3	330	550	0.275
베냉	26.5	109.0	36.5	330	550	0.275
베네수엘라	26.5	47.6	37.3	330	550	0.275
베트남	12.8	23.8	27.6	165	550	0.275
벨기에	12.8	32.0	17.7	330	550	0.275

벨라루스	26.5	47.6	35.8	330	550	0.275
벨리즈	26.5	109.0	37.3	330	550	0.275
보나이크	21.8	85.8	36.7	330	550	0.27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4.6	62.3	22.0	330	550	0.275
보츠와나	26.5	47.6	36.5	330	550	0.275
볼리비아	26.5	47.6	37.3	330	550	0.275
부룬디	26.5	47.6	36.5	330	550	0.275
부르키나파소	26.5	47.6	36.5	330	550	0.275
부탄	26.5	109.0	37.3	165	550	0.275
불가리아	12.8	32.0	14.7	330	550	0.275
브라질	26.5	47.6	37.7	330	550	0.275
브루나이	26.5	47.6	34.2	165	550	0.275
사모아	26.5	47.6	38.8	330	550	0.275
사바	21.8	85.8	36.7	330	550	0.275
사우디아라비아	26.5	47.6	43.5	165	550	0.275
사이판	10.0	27.5	18.8	165	550	0.275
사이프러스	12.8	32.0	17.7	330	550	0.275
산마리노	12.8	32.0	19.3	330	550	0.275
상투메프린시페	26.5	47.6	34.2	330	550	0.275
생바르톨레미	14.6	62.3	23.5	330	550	0.275
서사하라	26.5	47.6	36.5	330	550	0.275
세네갈	26.5	47.6	43.5	330	550	0.275
세르비아	26.5	47.6	35.8	330	550	0.275
세이셸	26.5	47.6	43.5	330	550	0.275
세인트 마틴	14.6	62.3	23.5	330	550	0.275
세인트루시아	26.5	47.6	37.3	165	550	0.275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6.5	47.6	37.3	330	550	0.275
세인트키츠네비스	26.5	47.6	37.3	330	550	0.275
소말리아	22.0	44.0	27.0	330	550	0.275
솔로몬제도	26.5	47.6	38.8	330	550	0.275
수단	26.5	47.6	36.5	330	550	0.275
수리남	26.5	47.6	43.5	330	550	0.275
스리랑카	26.5	109.0	43.5	165	550	0.275
스발바르 제도	14.6	62.3	22.0	330	550	0.275
스와질랜드	26.5	47.6	36.5	330	550	0.275
스웨덴	12.8	32.0	17.7	330	550	0.275
스위스	12.8	32.0	16.1	330	550	0.275
스페인	12.8	32.0	16.1	330	550	0.275
스페인령 카나리제도	12.8	32.0	17.7	330	550	0.275
슬로바키아	12.8	32.0	19.3	330	550	0.275
슬로베니아	12.8	32.0	19.3	330	550	0.275
시리아	26.5	47.6	37.3	165	550	0.275
시에라리온	26.5	47.6	38.8	330	550	0.275
신트마르탱	21.8	85.8	36.7	330	550	0.275
신트외스타티우스	21.8	85.8	36.7	330	550	0.275
싱가포르	12.8	23.8	21.7	165	550	0.275
아랍에미리트	26.5	47.6	37.3	165	550	0.275
아루바	21.8	85.8	39.8	330	550	0.275
아르메니아	26.5	47.6	35.8	330	550	0.275
아르헨티나	26.5	109.0	37.7	330	550	0.275
아이슬란드	14.6	62.3	20.5	330	550	0.275
아이티	26.5	47.6	35.8	330	550	0.275
아일랜드	12.8	32.0	17.7	330	550	0.275
아제르바이잔	26.5	47.6	35.8	330	550	0.275

아프가니스탄	26.5	47.6	43.5	165	550	0.275
안도라	14.6	62.3	20.5	330	550	0.275
안겔라	26.5	47.6	37.3	330	550	0.275
알바니아	12.8	32.0	19.3	330	550	0.275
알제리	26.5	47.6	36.5	330	550	0.275
앙골라	26.5	47.6	36.5	330	550	0.275
앤티가 바부다	26.5	47.6	37.3	330	550	0.275
에스토니아	12.8	32.0	14.7	330	550	0.275
에콰도르	27.5	78.8	38.3	330	550	0.275
에티오피아	26.5	47.6	43.5	330	550	0.275
엘살바도르	26.5	47.6	37.3	330	550	0.275
영국	12.8	32.0	15.8	330	550	0.27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6.5	47.6	37.3	330	550	0.275
예멘	26.5	47.6	38.8	165	550	0.275
오만	26.5	47.6	37.3	165	550	0.275
오스트리아	12.8	32.0	17.5	330	550	0.275
온두라스	26.5	47.6	37.3	330	550	0.275
올란드 제도	12.8	32.0	17.7	330	550	0.275
요르단	26.5	47.6	37.3	165	550	0.275
우간다	26.5	47.6	43.5	330	550	0.275
우루과이	26.5	47.6	36.7	330	550	0.275
우즈베키스탄	26.5	109.0	36.7	165	550	0.275
우크라이나	26.5	47.6	35.8	330	550	0.275
이라크	26.5	47.6	37.3	165	550	0.275
이란	26.5	47.6	37.3	165	550	0.27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6.5	47.6	37.3	165	550	0.275
이집트	26.5	47.6	37.3	330	550	0.275
이탈리아	12.8	32.0	14.6	330	550	0.275
인도	26.5	47.6	41.8	165	550	0.275
인도네시아	26.5	47.6	38.8	165	550	0.275
일본	10.0	27.5	5.8	165	550	0.275
자메이카	26.5	47.6	37.3	330	550	0.275
잠비아	26.5	109.0	36.5	330	550	0.275
저지 섬	12.8	32.0	15.8	330	550	0.275
적도기니	26.5	109.0	36.5	330	550	0.275
조지아	26.5	47.6	37.3	330	550	0.275
중국	11.9	36.6	19.3	165	550	0.27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6.5	47.6	36.5	330	550	0.275
지부티	26.5	47.6	34.2	330	550	0.275
지브롤터	26.5	47.6	36.5	330	550	0.275
짐바브웨	26.5	109.0	36.5	330	550	0.275
차드	26.5	47.6	43.5	330	550	0.275
체우타제도(스페인령)	12.8	32.0	16.1	330	550	0.275
체코	12.8	32.0	19.3	330	550	0.275
칠레	26.5	47.6	37.3	330	550	0.275
카메룬	26.5	47.6	36.5	330	550	0.275
카보베르데	26.5	109.0	36.5	330	550	0.275
카자흐스탄	26.5	47.6	35.8	165	550	0.275
카타르	26.5	47.6	37.3	165	550	0.275
캄보디아	26.5	47.6	43.5	165	550	0.275
캐나다	10.0	27.5	19.1	165	550	0.275
케냐	26.5	109.0	36.5	330	550	0.275
케이맨 제도	26.5	47.6	37.3	330	550	0.275
코모로	26.5	109.0	36.5	330	550	0.275

코소보	12.8	32.0	19.3	330	550	0.275
코스타리카	26.5	47.6	36.7	330	550	0.275
코트디부아르	26.5	47.6	34.5	330	550	0.275
콜롬비아	26.5	47.6	37.3	330	550	0.275
콩고공화국	26.5	109.0	36.5	330	550	0.275
콩고민주 공화국	26.5	109.0	36.5	330	550	0.275
쿠바	26.5	109.0	37.3	330	550	0.275
쿠웨이트	26.5	47.6	37.3	165	550	0.275
국 제도	33.6	87.0	33.0	330	550	0.275
큐라소	21.8	85.8	36.7	330	550	0.275
크로아티아	14.6	62.3	22.0	330	550	0.275
크루즈로밍	40.3	72.4	84.3	330	550	0.275
크리스마스섬	10.0	27.5	24.8	330	550	0.275
키르기스스탄	26.5	109.0	35.8	165	550	0.275
타지키스탄	26.5	109.0	38.8	165	550	0.275
탄자니아	26.5	47.6	38.8	330	550	0.275
태국	10.0	27.5	20.2	165	550	0.275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26.5	47.6	37.3	330	550	0.275
터키	26.5	47.6	31.2	330	550	0.275
토고	26.5	47.6	43.5	330	550	0.275
통가	26.5	47.6	43.5	330	550	0.275
투르크메니스탄	26.5	109.0	35.8	165	550	0.275
튀니지	26.5	47.6	36.5	330	550	0.275
트리니다드토바고	26.5	47.6	37.3	330	550	0.275
파나마	26.5	47.6	38.8	330	550	0.275
파라과이	26.5	47.6	35.8	330	550	0.275
파키스탄	26.5	47.6	37.3	165	550	0.275
파푸아뉴기니	26.5	47.6	37.3	330	550	0.275
팔라우	26.5	109.0	43.5	330	550	0.275
페로 제도	26.5	47.6	34.2	330	550	0.275
페루	26.5	47.6	37.3	330	550	0.275
포르투갈	12.8	32.0	14.7	330	550	0.275
폴란드	12.8	32.0	20.2	330	550	0.275
푸에르토리코	12.8	23.8	23.2	330	550	0.275
프랑스	12.8	32.0	14.6	330	550	0.275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6.5	47.6	34.2	330	550	0.275
피지	26.5	47.6	38.8	330	550	0.275
핀란드	12.8	32.0	17.7	330	550	0.275
필리핀	12.8	32.0	18.0	165	550	0.275
헝가리	12.8	32.0	19.3	330	550	0.275
호주	10.0	27.5	21.6	330	550	0.275
홍콩	12.8	32.0	15.8	165	550	0.275

2. KT 국가별 로밍서비스 요금표

<WCDMA/GSM자동로밍 국가별 요금(단위: 원/초, 건 부가세 포함)>

국가	음성(단위:원/초)			영상			데이터 (0.5KB 당)	로밍SMS 발신	로밍LMS 발신	로밍MMS 발신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3국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3국				
가나	-	6.38	9.13	-	-	-	0.275	110	110	550
가봉	-	5.61	90.31	-	-	-	2.2	220	220	550
가이아나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감비아	-	19.58	43.56	-	-	-	2.2	330	330	550

건지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과달루페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과테말라	18.81	18.81	50.71	-	-	-	0.275	220	220	550
괌	1.32	1.98	1.98	-	-	-	0.275	22	33	220
그레나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그루지아	-	7.15	46.53	-	-	-	0.275	110	110	550
그리스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그린란드	-	8.80	32.23	-	-	-	0.275	110	110	550
기니	-	8.03	29.70	-	-	-	2.2	330	330	550
기니비사우	-	18.59	81.07	-	-	-	-	330	330	550
나미비아	8.58	8.36	37.73	-	-	-	-	110	110	550
나우루	8.58	15.40	27.06	-	-	-	0.275	330	330	550
나이지리아	-	9.68	23.98	-	-	-	0.275	220	220	550
남수단	12.87	11.44	37.84	-	-	-	-	330	330	550
남아프리카공화국	-	8.25	18.15	-	-	-	0.275	110	110	550
네덜란드	-	14.08	30.58	-	16.06	27.50	0.275	330	330	550
네팔	11.55	17.16	42.90	-	-	-	0.275	330	330	550
노르웨이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뉴질랜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뉴칼레도니아	-	8.36	63.03	-	-	-	2.2	330	330	550
니제르	-	14.08	77.66	-	-	-	-	330	330	550
니카라과	24.86	16.61	109.45	-	-	-	0.275	220	220	550
대만	0.99	1.98	1.98	0.99	3.3	3.3	0.275	22	33	220
데시라데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덴마크	-	1.98	1.98	-	-	-	0.275	22	33	220
도미니카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도미니카공화국	-	17.60	74.58	-	-	-	0.275	330	330	550
독일	-	1.98	1.98	-	-	-	0.275	22	33	220
동티모르	-	12.76	29.70	-	-	-	0.275	330	330	550
라오스	-	1.98	1.98	-	-	-	0.275	22	33	220
라이베리아	-	8.03	29.70	-	-	-	0.275	330	330	550
라트비아	-	6.38	50.16	-	-	-	0.275	110	110	550
러시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레바논	-	11.11	23.76	-	-	-	2.2	330	330	550
레소토	-	18.70	41.03	-	-	-	0.275	330	330	550
레위니옹	-	14.96	65.78	-	-	-	-	330	330	550
루마니아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룩셈부르크	-	1.98	1.98	-	-	-	-	22	33	220
르완다	-	5.50	26.73	-	-	-	-	110	110	550
리비아	-	22.11	66.55	-	-	-	2.2	330	330	550
리투아니아	-	14.08	76.23	-	-	-	0.275	330	330	550
리히텐슈타인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마다가스카르	-	1133	63.36	-	-	-	0.275	110	110	550
마르티니크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리 갈란테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요트	-	14.96	65.78	-	-	-	-	330	330	550
마카오	-	1.98	1.98	-	-	-	0.275	22	33	220
마케도니아	-	27.50	85.03	-	-	-	0.275	330	330	550
말라위	-	21.01	66.11	-	-	-	-	220	220	550
말레이시아	0.99	1.98	1.98	-	-	-	0.275	22	33	220
말리	-	15.95	79.20	-	-	-	0.275	330	330	550
맨 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멕시코	-	16.83	64.90	-	-	-	0.275	330	330	550
모나코	-	16.06	34.65	-	-	-	-	220	220	550

마로구1	-	27.28	136.51	-	-	-	0.275	330	330	550
모리셔스	-	7.48	44.55	-	-	-	0.275	110	110	550
모리타니	-	14.63	55.00	-	-	-	0.275	330	330	550
모잠비크	-	13.31	36.41	-	-	-	0.275	220	220	550
몬테라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몬테네그로	-	9.90	116.38	-	-	-	0.275	110	110	550
몰도바	-	7.70	54.45	-	-	-	0.275	110	110	550
몰디브	-	3.85	36.96	-	-	-	2.2	330	330	550
몰타	-	17.71	102.63	-	-	-	0.275	330	330	550
몽골	-	13.53	68.20	-	-	-	0.275	220	220	550
미국	-	1.98	1.98	-	-	-	0.275	22	22	220
미국령버진아일랜드	-	1.98	1.98	-	-	-	-	22	22	220
미얀마	0.66	1.98	1.98	-	-	-	-	22	33	220
바누아투	-	11.00	43.45	-	-	-	0.275	330	330	550
바레인	-	4.18	19.91	-	-	-	0.275	110	110	550
바베이도스	-	21.78	43.45	-	-	-	-	330	330	550
바티칸 시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바하마	-	24.31	122.54	-	-	-	2.2	330	330	550
방글라데시	9.35	9.35	18.70	-	-	-	0.275	110	110	550
버뮤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베네쥬엘라	-	20.35	75.13	-	-	-	2.2	330	330	550
베냉	-	10.56	88.88	-	-	-	0.275	110	110	550
베트남	-	1.98	1.98	-	-	-	-	22	33	220
벨기에	-	1.98	1.98	-	-	-	0.275	22	33	220
벨라루스	4.73	5.50	72.05	-	35.86	35.86	0.275	110	110	550
벨리즈	19.80	19.80	89.54	-	-	-	2.2	330	330	550
보네르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보스니아	-	6.16	27.28	-	-	-	0.275	110	110	550
보츠와나	-	9.35	64.68	-	-	-	0.275	330	330	550
볼리비아	-	15.40	50.38	-	-	-	0.275	330	330	550
부룬디	-	7.15	45.21	-	-	-	-	330	330	550
부르키나파소	-	15.95	55.88	-	-	-	0.275	110	110	550
부탄	27.06	33.88	44.66	-	-	-	2.2	330	330	550
불가리아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브라질	-	15.40	51.26	-	-	-	0.275	330	330	550
브루나이	-	5.28	38.61	-	-	-	0.275	220	220	550
사모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사바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사우디아라비아	-	4.95	27.28	-	-	-	0.275	220	220	550
사이판	-	1.98	1.98	-	-	-	-	22	33	220
산마리노	-	1.98	1.98	-	-	-	-	22	33	220
생피에르 미클롱	1.54	1.98	1.98	-	-	-	0.275	22	33	220
세네갈	-	24.20	60.50	-	-	-	2.2	330	330	550
세르비아	-	14.63	116.71	-	-	-	-	110	110	550
세우타	-	1.98	1.98	-	-	-	0.275	22	33	220
세이셸	-	13.64	49.28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루시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마틴	-	11.33	51.26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빈센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키츠네비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소말리아	-	25.08	37.51	-	-	-	-	220	220	550
솔로몬제도	9.90	19.91	40.15	-	-	-	0.275	330	330	550
수단	-	12.43	27.61	-	-	-	0.275	330	330	550
수리남	-	2035	80.96	-	-	-	0.275	330	330	550

스리랑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발바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웨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위스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페인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슬로바키아	-	10.45	54.45	-	-	-	0.275	220	220	550
슬로베니아	-	11.00	57.20	-	-	-	0.275	330	330	550
시리아	-	935	49.83	-	-	-	22	220	220	550
시에라리온	-	9.90	21.78	-	-	-	-	220	220	550
신트마르텐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신트외스타티우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싱가포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썬박델레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아랍에미리트	-	1.98	1.98	-	-	-	-	22	33	220
아루바	-	21.78	43.45	-	-	-	-	330	330	550
아르메니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아르헨티나	-	13.53	64.68	-	-	-	0.275	220	220	550
아이슬랜드	-	1.98	1.98	-	-	-	-	22	33	220
아이티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아일랜드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아제르바이잔	-	1.98	1.98	-	-	-	0.275	22	33	220
아프가니스탄	-	11.88	43.45	-	-	-	0.275	330	330	550
앵귈라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안도라	-	7.15	51.70	-	-	-	2.2	330	330	550
안티구아	-	21.78	43.45	-	-	-	-	330	330	550
알바니아	-	10.56	62.48	-	-	-	0.275	220	220	550
알제리	-	8.36	65.01	-	-	-	0.275	330	330	550
앙골라	-	8.91	61.16	-	-	-	2.2	220	220	550
에스토니아	-	9.35	74.80	-	-	-	0.275	220	220	550
에콰도르	-	20.35	78.76	-	-	-	0.275	330	330	550
에티오피아	-	4.51	63.80	-	-	-	-	330	330	550
엘살바도르	-	15.95	52.91	-	-	-	0.275	220	220	550
영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영국령버진아일랜드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예멘	-	5.83	42.13	-	-	-	2.2	110	110	550
오만	-	5.28	23.98	-	-	-	0.275	110	110	550
오스트리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온두라스	-	17.60	62.48	-	-	-	0.275	330	330	550
올란드제도	-	8.91	32.78	-	8.91	17.60	0.275	220	220	550
요르단	-	11.55	27.83	-	-	-	0.275	330	330	550
우간다	-	9.90	45.43	-	-	-	0.275	110	110	550
우루과이	-	17.93	25.85	-	-	-	-	220	220	550
우즈베키스탄	5.06	9.46	100.65	-	-	-	-	110	110	550
우크라이나	5.28	9.35	60.61	-	-	-	0.275	110	110	550
이라크	-	4.95	35.53	-	-	-	0.275	330	330	550
이란	6.93	6.93	48.73	-	-	-	-	220	220	550
이스라엘	-	19.58	75.46	-	-	-	0.275	330	330	550
이집트	-	12.10	56.65	-	23.43	113.30	0.275	330	330	550
이탈리아	-	15.51	53.13	-	-	-	0.275	330	330	550
인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인도네시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일본	-	1.98	1.98	-	-	-	0.275	22	33	220
자메이카	-	21.78	43.45	-	-	-	-	330	330	550
잠비아	-	9.46	44.55	-	-	-	2.2	220	220	550

저지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적도기니	-	9.90	49.28	-	-	-	2.2	330	330	550
조지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중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4.31	29.26	-	-	-	0.275	330	330	550
지부티	-	13.31	92.73	-	-	-	-	330	330	550
지브랄타	-	1.98	1.98	-	-	-	0.275	22	33	220
짐바브웨	-	11.55	80.30	-	-	-	-	330	330	550
차드	-	14.30	94.60	-	-	-	0.275	330	330	550
체코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칠레	-	10.23	52.25	-	-	-	0.275	220	220	550
카나리제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카메룬	-	13.86	103.51	-	-	-	0.275	330	330	550
카자흐스탄	-	6.71	56.76	-	-	-	0.275	110	110	550
카타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카보베르데	-	8.36	107.25	-	-	-	2.2	330	330	550
캄보디아	-	1.98	1.98	-	-	-	-	22	33	220
캐나다	1.54	1.98	1.98	-	-	-	-	22	33	220
케냐	-	10.23	90.86	-	-	-	0.275	110	110	550
케이만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코소보	-	6.16	77.88	-	-	-	-	330	330	550
코스타리카	-	12.43	24.75	-	-	-	0.275	330	330	550
코트디부아르	-	44.11	56.10	-	-	-	2.2	330	330	550
콜롬비아	20.13	20.13	67.21	-	-	-	0.275	330	330	550
콩고	-	19.80	49.28	-	-	-	2.2	220	220	550
콩고민주공화국	-	20.46	51.26	-	-	-	0.275	220	220	550
쿠라소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쿠바	-	13.75	81.51	-	-	-	-	330	330	550
쿠웨이트	0.44	1.98	1.98	-	-	-	0.275	22	33	220
룩셈부르크	-	30.25	78.98	-	-	-	2.2	330	330	550
크로아티아	-	17.71	57.20	-	-	-	0.275	220	220	550
크리스마스섬	-	9.68	36.30	-	-	-	0.275	330	330	550
키르기즈스탄	-	2.53	68.20	-	-	-	0.275	220	220	550
키프로스	-	2.31	21.01	-	-	-	0.275	110	110	550
타지키스탄	-	9.46	72.16	-	-	-	0.275	110	110	550
탄자니아	-	14.85	59.18	-	-	-	0.275	330	330	550
태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터크스앤카이코스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튀르키예	-	1.98	1.98	-	-	-	0.275	22	33	220
토고	-	18.70	82.61	-	-	-	2.2	330	330	550
통가	-	11.00	43.45	-	-	-	0.275	330	330	550
투르크메니스탄	-	17.05	128.70	-	-	-	-	220	220	550
튀니지	-	12.98	28.60	-	-	-	0.275	110	110	550
트리니다드토바고	-	14.41	48.95	-	-	-	0.275	330	330	550
파나마	-	14.96	69.63	-	-	-	-	330	330	550
파라과이	9.90	16.06	48.40	-	-	-	-	220	220	550
파로제도	-	11.11	74.80	-	-	-	0.275	330	330	550
파키스탄	-	12.10	21.45	-	-	-	0.275	330	330	550
파푸아뉴기니	-	11.00	43.45	-	-	-	-	330	330	550
팔라우	-	78.98	138.05	-	-	-	2.2	330	330	550
팔레스타인	-	16.06	63.80	-	-	-	0.275	330	330	550
페루	11.00	11.00	50.71	-	-	-	0.275	110	110	550
포르투갈	-	15.51	64.90	-	51.81	103.73	0.275	330	330	550
폴란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푸에르토리코	-	12.76	28.60	-	-	-	0.275	220	220	550
프랑스	-	1.98	1.98	-	-	-	-	22	33	220
프랑스령 기아나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12.43	72.71	-	-	-	0.275	330	330	550
피지	8.58	15.40	27.06	-	-	-	0.275	330	330	550
핀란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필리핀	-	1.98	1.98	-	-	-	0.275	22	33	220
헝가리	-	1.98	1.98	-	-	-	0.275	22	33	220
호주	-	1.98	1.98	-	-	-	0.275	22	33	220
홍콩	-	1.98	1.98	-	-	-	0.275	22	33	220